

#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22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0. 31.  
발의자 : 김성원 · 윤상현 · 이은권  
경대수 · 함진규 · 김정재  
김명연 · 성일종 · 정유섭  
이현재 · 이양수 의원  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.

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,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. 이에 현행법의 ‘잔임기간’을 ‘임기 중 남은 기간’으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,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6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제2항 중 “전임자의 임기”을 “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6조(위원의 임기) ① (생략)</p> <p>②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보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<u>전임자의 임기의 남</u> <u>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76조(위원의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전임자 임기의 남 은 기간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